

KOREA INSTITUTE OF CORPORATE GOVERNANCE AND SUSTAINABILITY

#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안의 주요 내용

[2026. 6. 8.]



오덕교 선임연구위원 (Ph.D)  
스튜어드십 코드 센터장



한국ESG기준원

K O R E A C O R P O R A T E G O V E R N A N C E S E R V I C E

# CONTENTS

01 개요

02 주요 개정사항

03 향후 일정



K O R E A C O R P O R A T E G O V E R N A N C E S E R V I C E

PART 1

# 개요

KOREA INSTITUTE OF CORPORATE GOVERNANCE AND SUSTAINABILITY



한국ESG기준원



## 개요

- 한국 스투어드십 코드(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) : 2016년 12월 제정
- 추진 경과
  - 스투어드십 코드 해설서 발간(2017.6, 한국ESG기준원)
  - 스투어드십 코드 법령 해석집 발간(2017.6, 금융위원회)
  - 스투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(구, 해설서) 개정(2024.3, 한국ESG기준원)
    - .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내용 반영
  - 스투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 발표(2025.12.29.)
    - . 스투어드십 코드의 개정방향 및 이행점검 계획 발표

PART 2

# 주요 개정사항

KOREA INSTITUTE OF CORPORATE GOVERNANCE AND SUSTAINABILITY



한국ESG기준원



## 안내지침 번호 부여

- 가독성을 위하여 각 원칙의 안내 지침에 '원칙번호-단락번호' 형식으로 단락번호를 부여

원칙	안내지침	원칙	안내지침
1	1-1~7 (+1)	5	5-1~10 (-)
2	2-1~4 (-)	6	6-1~5 (-1)
3	3-1~6 (+1)	7	7-1~5 (-)
4	4-1~5 (+1)		

## 적용 자산군의 확대

- 기존의 국내 상장주식에서 채권, 인프라, 부동산, 비상장주식, 해외자산 등에 자율적으로 적용 가능토록 개정

현행	개정안
<p>“원칙”의 적용</p> <p>1. 이 “원칙”은 기본적으로 <u>한국 상장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국내외 기관투자자, 즉 자산소유자와 자산운용자에</u> 적용한다.</p>	<p>“원칙”의 적용</p> <p>1. 이 “원칙”은 기본적으로 한국 상장회사의 <u>주식에 투자한 국내외 기관투자자에</u> 적용한다. <u>다만, 국내 상장주식 외에 채권·인프라·부동산·비상장주식 및 해외자산 등에 투자한 국내외 기관투자자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각 기관투자자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.</u></p>

## 적용 자산군 확대

- 적용 자산군 확대에 따라 '주식 매각'을 '투자 철회'로 수정

현행	개정안
<p>“원칙”의 도입 목적과 의의</p> <p>8. 수탁자 책임 활동이 투자대상회사의 일상적인 경영에 대한 간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. 또한 고객과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인 경우에는 <b>주식 매각</b>을 고려할 수 있다.</p>	<p>“원칙”의 도입 목적과 의의</p> <p>8. 수탁자 책임 활동이 투자대상회사의 일상적인 경영에 대한 간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. 또한 고객과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인 경우에는 <b>투자 철회</b>를 고려할 수 있다.</p>



# ESG 또는 지속가능성 요소의 반영(#1)

- 비재무 정보의 범위를 기존의 지배구조에서 ESG 요소를 비롯한 지속가능성으로 확대함
- “원칙”의 도입 목적과 의의, 안내지침 1-1과 3-2를 개정함

현행	개정안
<p>“원칙”의 도입 목적과 의의</p> <p>5.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의 범위는 의결권 행사로 한정되지 않는다. 기업 경영 전략과 성과, 위험 관리, <u>지배구조</u> 등 핵심 경영사항에 대한 점검과 이사회 등과의 협의를 포함하며, 주주제안과 소송 참여 등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<u>활동을</u> 포괄한다. 기관투자자의 관여 활동은 ‘명확하며 건설적인 목적’을 지향하는 회사와의 대화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주주활동이다.</p>	<p>“원칙”의 도입 목적과 의의</p> <p>5.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의 범위는 의결권 행사로 한정되지 않는다. 기업 경영 전략과 성과, 위험 관리, <u>ESG(환경, 사회, 지배구조) 요소를 비롯한 지속가능성</u> 등 핵심 경영사항에 대한 점검과 이사회 등과의 협의를 포함하며, 주주제안과 소송 참여 등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<u>활동 및 그러한 활동의 결과를 고려하는 투자의사결정(투자 확대, 유지, 축소, 배제, 철회 등을 포괄한다.)</u>을 포괄한다. 기관투자자의 관여 활동은 ‘명확하며 건설적인 목적’을 지향하는 회사와의 대화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주주활동이다.</p>

## ESG 또는 지속가능성 요소의 반영(#2)

### ● ESG 요소를 비롯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수탁자 책임 활동 전개

현행	개정안
<p><b>원칙 1의 안내 지침</b></p> <p>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 경제·사회·사업 환경 등에 관한 깊은 <b>이해를</b> 바탕으로 적극적인 소통과 주주활동을 통해 회사가치의 상승과 회사의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할 책임이 있다.</p>	<p><b>원칙 1의 안내 지침</b></p> <p><b>1-1.</b>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 경제·사회·사업 환경 등에 관한 깊은 <b>이해와 ESG 요소를 비롯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를</b> 바탕으로 적극적인 소통과 주주활동을 통해 회사가치의 상승과 회사의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할 책임이 있다.</p>



## ESG 또는 지속가능성 요소의 반영(#3)

- 주기적 점검 대상인 비재무 정보의 범위를 기존의 지배구조에서 ESG 요소를 비롯한 지속가능성으로 확대함

현행	개정안
<p><b>원칙 3의 안내 지침</b></p> <p>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가치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재무 구조, 경영성과 등 재무적 요소는 물론 <u>지배 구조</u>, 경영전략 등 비재무적 요소까지 점검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.</p>	<p><b>원칙 3의 안내 지침</b></p> <p><u>3-2.</u>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가치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재무구조, 경영성과 등 재무적 요소는 물론 <u>ESG 요소를 비롯한 지속가능성</u>, 경영전략 등 비재무적 요소까지 점검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.</p>



# 상법 개정사항(이사충실의무의 반영)

- 상법 개정 조문을 인용하여 기존 문구를 수정함

현행	개정안
<p>“원칙”의 도입 목적과 의의</p> <p>3. 기관투자자는 <u>이사회가 부여받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지</u>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와 적극 대화하는 등 건설적인 관여활동에 나설 책임이 있다. <del>이사회는 회사와 주주를 대표해 경영(진)을 감독함으로써 책임을 이행한다.</del></p>	<p>“원칙”의 도입 목적과 의의</p> <p>3. 기관투자자는 <u>투자대상회사의 이사회가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</u>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와 적극 대화하는 등 건설적인 관여활동에 나설 책임이 있다.</p>





## 원칙준수 · 예외설명의 강화

- 원칙의 **비준수 사유 설명**을 **원칙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**에 한정하여 적용

현행	개정안
<p>“원칙”의 적용</p> <p>4. 참여 기관투자자 등은 “원칙 준수 및 예외 설명(comply or explain)” 방식에 따라 기본적으로 원칙을 준수하되, 예외적으로 원칙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. 참여 기관투자자 등은 사업모델, 투자 정책을 고려하여 원칙을 준수할 수 없는 세부 사항에 관해서 미이행 사유와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대안을 고객과 수익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.</p>	<p>“원칙”의 적용</p> <p>4. 참여 기관투자자 등은 “원칙 준수 및 예외 설명(comply or explain)” 방식에 따라 기본적으로 원칙을 준수하되, 예외적으로 <b>일부 원칙이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아 해당</b> 원칙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<b>그</b> 이유를 <b>충분히</b> 설명해야 한다. 참여 기관투자자 등은 사업모델, 투자 정책을 고려하여 원칙을 준수할 수 없는 세부 사항에 관해서 미이행 사유와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대안을 고객과 수익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.</p>



## 원칙준수 · 예외설명 방식의 강화

### ● 원칙의 비준수 사유 설명을 원칙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

[원칙3]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.

[원칙 3]은 기관투자자가 투자자산의 중장기적인 가치 제고를 위해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KCGS는 이 원칙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. 그러나 기관투자자가 이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 환경, 사회,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점검하고자 할 때에, KCGS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관투자자가 관련된 방침을 설정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
KCGS의 책임투자 지원서비스의 일환으로 상장기업의 비재무 성과, 국내외의 책임투자 관련 소식, 법령의 변화, 주요 쟁점에 대한 분석보고서 등을 매일, 격주, 수시, 반기 등 다양한 주기로 제공하여 투자대상 회사 점검에 대한 지침 수립 및 이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.

KCGS는 매일 고객사의 투자대상기업과 관련된 주요 ESG 관련 소식을 정리하여 고객 기관투자자에 제공하고, 관련 이슈의 영향이 상당한 경우 신속하게 이슈의 긍정적/부정적 영향을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. 격주 단위로 해외 ESG 관련 소식을 보고하여 시장동향을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, 투자대상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령이 발의되거나 시행될 때에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송부하고 있습니다. 아울러,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상장기업의 비재무적 성과 정보가 시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반기 단위로 정보를 갱신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. 기관투자자의 투자전략에 따라서는 [원칙 4]와 연계하여 보다 적극적인 점검이 가능하도록, 별도로 선정된 요소를 활용하여 점검 필요 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KCGS는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KCGS의 고객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 기업을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

[출처 : 한국ESG기준원 홈페이지(www.cgs.or.kr)]



# 자산운용자 및 자산소유자 구체화 #1

## ● 자산운용자의 대표적인 유형에 대한 용어 정리

현행	개정안
<p>“원칙”의 도입 목적과 의의</p> <p>6. 기관투자자는 크게 ‘자산소유자’(asset owner)와 ‘자산운용자’(asset manager)로 구별된다. 자산운용자는 자산운용, 대상회사와의 대화 등을 통해 일상적으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한다. 자산운용자에는 <u>자산운용사가 대표적으로 포함된다.</u>~</p>	<p>“원칙”의 도입 목적과 의의</p> <p>6. 기관투자자는 크게 ‘자산소유자’(asset owner)와 ‘자산운용자’(asset manager)로 구분된다. 자산운용자는 자산운용, 대상회사와의 대화 등을 통해 일상적으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한다. 자산운용자에는 <u>집합투자업자(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.)가 대표적인 유형이다.</u>~</p>

## 자산운용자 및 자산소유자 구체화 #2

### ● 자산소유자의 직·간접 수탁자 책임 활동 방식을 제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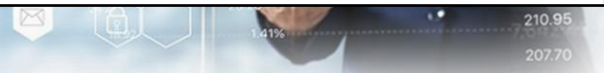
현행	개정안
<p>“원칙”의 도입 목적과 의의</p> <p>6. ~ 자산소유자는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지시·평가 등 수단을 활용해 자산운용자가 효과적인 점검·관여 활동을 수행하도록 <u>하는 방식으로 수탁자 책임을 이행할 수 있다.</u> ~.</p>	<p>“원칙”의 도입 목적과 의의</p> <p>6. ~ 자산소유자는 <u>수탁자 책임 활동을 직접 수행하거나 자산운용자에 위탁하여 간접적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다.</u> 간접적으로 수행할 경우, <u>자산소유자는</u>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지시·평가 등 수단을 활용해 자산운용자가 효과적인 점검·관여 활동을 수행하도록 <u>하여야 한다.</u> ~</p>



# 자산운용자 및 자산소유자 구체화 #3

## ● 자산소유자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

현행	개정안
<p>“원칙”의 도입 목적과 의의</p> <p>6. ~ <u>연기금</u>, 보험회사 등이 자산소유자의 주요 유형이다.</p>	<p>“원칙”의 도입 목적과 의의</p> <p>6. ~ <u>국가재정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민연금·직역연금 등의 연금과 기금, 그 연기금을 관리·운영하는 법인,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법인</u>, 보험회사 등이 자산소유자의 주요 유형이다.</p>





## 서비스 제공기관의 구체적 열거

-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제시

현행	개정안
<p>“원칙”의 적용</p> <p>2. ~ 따라서 “원칙”은 본문의 세부 내용과 관련한 (자문)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, <a href="#">투자자문사</a> 등에도 적용된다.</p>	<p>“원칙”의 적용</p> <p>2. ~ 따라서 “원칙”은 본문의 세부 내용과 관련한 (자문)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, <a href="#">투자자문사</a>, <a href="#">ESG 평가기관</a>, <a href="#">ESG 데이터 제공기관</a>, <a href="#">관여활동 서비스 제공기관</a> 등 <a href="#">주주활동과 관련한 정보·자문 서비스 제공기관</a> 등에도 적용된다.</p>



#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의 역할 명시

## ● 3년마다 개정의 필요성 점검, 이행점검 수행

현행	개정안
<p><b>“원칙”의 적용</b></p> <p>7.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“원칙”에 대한 참여, “원칙”의 이행 동향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자본시장 전반의 수탁자 책임 이행 수준을 점검한다. 또한 참여기관투자자 등의 명단과 웹사이트 등 정보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공개한다. 이를 통해 자본시장 참여자 등은 해당 기관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,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투자 성향에 부합하는 기관투자자를 찾고, 이들의 수탁자 책임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. 그리고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수탁자 책임 이행과 관련한 국내의 모범적 관행과 문화, 자본시장의 발전 수준, 해외 스튜어드십 코드 및 국내외 법제 동향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“원칙”의 구체적인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한다.</p>	<p><b>“원칙”의 적용</b></p> <p>5.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.)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하며, 한국ESG기준원은 적절한 조직과 체계를 갖추어 위원회의 실무를 지원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위원회는 수탁자 책임 이행과 관련한 국내의 모범적 관행과 문화, 자본시장의 발전 수준, 해외 스튜어드십 코드 및 국내외 법제 동향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“원칙”의 구체적인 내용을 3년마다 점검하고 개선한다.</li> <li>- 위원회는 “원칙”에 대한 참여, “원칙”의 이행 동향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자본시장 전반 및 개별 참여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 수준을 점검한다.</li> </ul>



# 참여 통지 및 명단 공개

## ● 기존의 단락 변경 및 통합

현행	개정안
<p><b>“원칙”의 적용</b></p> <p>5. 참여 기관투자자 등은 다음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되, 공개 사항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해야 한다. “원칙” 참여를 결정하거나, 홈페이지 내용을 추가·변경한 경우 즉시 해당 내용을 최종 변경일, 웹사이트 주소와 함께 <a href="#">한국기업지배구조원</a>에 통지해야 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“원칙”의 수용과 이행에 참여한다는 뜻</li> <li>· 본문의 각 원칙과 안내 지침을 어떻게 이행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</li> <li>· 본문의 각 원칙과 안내 지침에서 공개하도록 한 사항</li> <li>· 본문의 각 원칙·안내 지침 중에서 이행하지 않는 항목 또는 각 안내 지침에서 공개하도록 함에도 공개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 미적용 사유 및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대안</li> <li>· 기관투자자가 운용하는 전체 펀드에 “원칙”을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여부와 펀드 유형별로 “원칙”의 적용·이행 여부와 수준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와 관련된 상세 내용</li> </ul>	<p><b>“원칙”의 적용</b></p> <p>6. 참여 기관투자자 등은 다음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되, 공개 사항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해야 한다. “원칙” 참여를 결정하거나, 홈페이지 내용을 추가·변경한 경우 즉시 해당 내용을 최종 변경일, 웹사이트 주소와 함께 <a href="#">한국ESG기준원</a>에 통지해야 한다. <a href="#">한국ESG기준원은 참여 기관투자자 등의 명단과 웹사이트 등 정보를 스투어드십 코드 웹사이트에 공개한다.</a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“원칙”의 수용과 이행에 참여한다는 뜻</li> <li>· 본문의 각 원칙과 안내 지침을 어떻게 이행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</li> <li>· 본문의 각 원칙과 안내 지침에서 공개하도록 한 사항</li> <li>· 본문의 각 원칙·안내 지침 중에서 이행하지 않는 항목 또는 각 안내 지침에서 공개하도록 함에도 공개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 미적용 사유 및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대안</li> <li>· 기관투자자가 운용하는 전체 펀드에 “원칙”을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여부와 펀드 유형별로 “원칙”의 적용·이행 여부와 수준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와 관련된 상세 내용</li> </ul>
<p><a href="#">8. 참여 기관투자자 등은 수탁자 책임과 관련한 정책, 절차, 공시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연락처와 함께 공개해야 한다.</a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<a href="#">수탁자 책임 정책 관련 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 및 연락처</a></li> </ul>

## 외부 위탁기관 선정 및 관리

- 수탁자 책임 정책에 외부 위탁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 · 관리 · 점검 반영

현행	개정안
<p data-bbox="420 918 544 953">&lt;신설&gt;</p>	<p data-bbox="917 625 1997 1272"><u>1-6.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 활동을 위임하거나 수탁자 책임 활동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외부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 수탁자 책임 정책에 부합하도록 독립성,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자산운용자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하고 관리해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선정 및 관리, 거래관계·이해관계 등으로부터 독립적 서비스 제공 여부에 대한 사항을 “정책”에 반영해야 한다.</u></p>



## 원칙 3 수정

### ● 주기적 점검 및 점검결과의 투자 의사결정체계 반영

현행	개정안
<p><b>&lt;원칙 3&gt;</b>           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<u>점검해야 한다.</u></p>	<p><b>&lt;원칙 3&gt;</b>           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<u>점검하고, 필요한 경우 점검결과를 투자 관련 의사결정체계에 반영한다.</u></p>
<p><b>&lt;신규 추가&gt;</b></p>	<p><u>3-5. 기관투자자는 투자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주기적 점검활동을 비롯한 주주활동의 결과를 자산의 배분 및 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.</u></p>



## 원칙 4 수정 #1

- 수탁자 책임 활동 내부 지침의 마련 및 공개
- 필요시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협력적 주주활동 수행

현행	개정안
<p>&lt;원칙 4&gt;            기관투자자는 <del>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, 필요한 경우</del>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<del>전개</del>시기와 절차,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<u>마련해야</u> 한다.</p>	<p>&lt;원칙 4&gt;           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<u>활동 시기</u>와 절차,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<u>마련하여 공개</u>하고, 이에 따라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.</p>
<p>&lt;신규 추가&gt;</p>	<p><u>4-5. 기관투자자는 필요하다면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다른 기관투자자들과 함께 회사와의 건설적인 대화 등의 관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.</u></p>



## 원칙 4 수정 #2

### ● 수탁자 책임 활동의 점진적 강화(escalation) 방안의 마련

현행	개정안
<p>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사정, 투자 정책, 내부 역량 등 여건을 고려해 소통과 관여 활동의 범위·절차·기준을 정한 내부 지침을 <u>마련해야</u> 한다.</p>	<p><u>4-3.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사정, 투자 정책, 내부 역량 등 여건을 고려해 소통과 관여 활동의 범위·절차·기준을 정한 내부 지침을 <b>마련하여 공개해야</b> 한다. <b>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대응에 따라 소통 및 관여활동의 단계를 점진적으로 강화하며, 이를 위한 기준·절차·방법을 내부 지침에 반영해야 한다. 다만 고객과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인 경우에는 투자 철회를 고려할 수 있다.</b></u></p>



# 원칙 5 수정 #1

- 애매모호한 권고 의존도의 공개를 서비스 내용(권고)에 대한 검토절차의 공개로 변경

현행	개정안
<p>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 자문서비스 이용 여부, 이용하는 경우의 서비스 범위와 활용 방식, 서비스 제공자, 해당 서비스 제공자의 권고에 <u>의존하는 정도</u>를 공개해야 한다.</p>	<p><u>5-8.</u>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 자문서비스 이용 여부, 이용하는 경우의 서비스 범위와 활용 방식, 서비스 제공자, 해당 서비스 제공자의 권고에 <u>대한 검토 절차 등을</u> 공개해야 한다.</p>





## 원칙 5 수정 #2

### ● 주식대여에 대한 안내지침 수정

- 기관투자자는 주식 대여·회수에 관한 내용을 의결권 정책에 반영하고, 필요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여야 함

현행	개정안
<p>기관투자자는 <u>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영향이 있는 경우 주식 대여, 대여주식 회수에 관한 내용을 의결권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.</u></p>	<p><u>5-10. 기관투자자는 <b>주식 대여 및 회수에 관한 내용을 의결권 정책을 반영해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주식 대여를 제한하거나 대여주식을 회수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.</b></u></p>



## 원칙 6 수정

- 안내지침 정비 : 주기적 보고 원칙-보고방식(연차 보고서 언급)-연차보고서 제출 順
- 매년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서의 한국ESG기준원 제출 의무화

현행	개정안
<p><u>자산운용자는</u> 원칙적으로 <u>자산소유자 등</u> 고객 또는 수익자에게 수탁자 책임 정책 및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.</p>	<p><u>6-2. 기관투자자는</u> 원칙적으로 고객 또는 수익자에게 수탁자 책임 정책 및 이행 현황을 <u>연 1회 이상</u>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.</p>
<p><del>자산소유자는 고객 또는 수익자에게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수탁자 책임 이행에 관한 정책, 실제 집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.</del></p>	
<p>&lt;신규 추가&gt;</p>	<p><u>6-4. 기관투자자는 매년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한국ESG기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



## 원칙 7 수정

- 운용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역량 및 전문성 확보 명시
- 외부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시 점검체계 마련

현행	개정안
<p>기관투자자는 적극적인 대화 등 주주활동을 토대로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발전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회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설적인 주주활동이 가능하도록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.</p>	<p><b>7-1.</b> 기관투자자는 적극적인 대화 등 주주활동을 토대로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발전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회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설적인 주주활동이 가능하도록 <b>투자정책, 운용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</b>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.</p>
<p>기관투자자는 내부 가용 자원,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적인 자문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수탁자 책임의 충실한 이행을 도모할 수 있다.</p>	<p><b>7-4.</b> 기관투자자는 내부 가용 자원,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적인 자문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수탁자 책임의 충실한 이행을 도모할 수 있다. <b>이 경우 외부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점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.</b></p>

PART 3

# 향후 일정

KOREA INSTITUTE OF CORPORATE GOVERNANCE AND SUSTAINABILITY



한국ESG기준원



## 향후 개정 일정

- 공개 의견수렴 (Public consultation)
  - 기 간 : 2026년 6월 8일~26일 (3주)
  - 방 법 : 의견서(자유 양식)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송부  
([stewardshipcode@cgs.or.kr](mailto:stewardshipcode@cgs.or.kr))



# 감사합니다



한국ESG기준원